

10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한국거래소)

[서비스 주요내용]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내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하여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상장·공시·청산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권리(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 분산원장기술 기반 토큰증권이 아닌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상장

한국거래소는 조각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일반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하여 주식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종증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토큰증권 발행·유통체계 정비방안(‘23.2.6.)」의 후속조치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①제4조, ②제373조의2 및 제373조의6

③제387조, 제390조, 제391조, 제393조, 제412조

①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중개업자 특례, 증권 발행,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인정되나, 투자계약 증권이 발행 이후 매매, 중개 등 ‘유통’에 있어서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②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허가받은 시장 개설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거래소는 이에 대한 시장 개설 및 운영이 불가능하나, 거래소가 투자계약증권 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③ 거래소는 증권시장 개설시 회원·업무·상장·공시 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신규 시장의 변동성, 비정형적 신종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시장 관리를 위해 거래소가 「시장운영

규정」을 마련(금융위 보고)하여 신종증권 시장의 회원·업무·상장·공시 규정을 탄력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부가조건]

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개설과 관련해서 ①증권상장규정, 공시규정 등 「신종증권 시장운영규정」을 마련하고, ②매매체결시스템, 상장공시시스템 등 IT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③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신종증권 시장 감시기준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소는 지정기간 종료에 따른 정리절차 등 운영계획, 분쟁처리·조정, 발행·유통규제 등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기대 효과]

그간 일반투자자에게는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경쟁 매매 방식의 장내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되며, 발행인의 경우에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시장운영규정 수립, IT시스템 개발,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24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